

의안번호	
의 퇴 인	최보운 의원
회 답 일	2026. 6. 26.
추계번호	26C1747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 증원 시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가재정소요는 총 9,000만원(연평균 1,8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안 제5조의3 (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)	18	18	18	18	18	90	1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3제2항 (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)	○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5조의3제6항 (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)	○ 마약류의 정책, 오남용 방지, 안전사용, 중독자의 사회 재활 등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또는 마약류별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다.	재량규정
3	안 제5조의3제7항 (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)	○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	재량규정
4	안 제5조의3제8항 (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)	○ 위원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의3제2항 (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)	○	○ 개정안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기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2	안 제5조의3제6항 (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)	×	○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또는 마약류별 전문가 협의체를 둘 경우 수당 및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조사연구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3	안 제5조의3제7항 (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)	×	○ 현시점에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분야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분과위원회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4	안 제5조의3제8항 (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)	×	○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경우, 자문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그 필요의 빈도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, 안 제5조의3제2항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기존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(위 ‘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’의 [표] 참고)
- 개정안은 시행일에 관하여 부칙 등에 규정한 바가 없으나 법안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가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기존 위원회 운영 사례를 고려하여 추계함¹⁾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구성 확대(30명 → 80명)에 기인하며, 본 추계에서는 증가 인원, 회의 횟수 및 회의수당 단가의 곱으로 산출
 - (위원 수 증가) 위원장을 포함한 최대 정수 80명 중 수당 지급 대상인 민간 위원 수 증가를 30명으로 가정²⁾
 - (회의횟수)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를 근거로 위원회 회의는 연 3회로 가정³⁾
 - (회의수당 단가) 기획예산처의 「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⁴⁾을 준용하여 2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9,000만 원으로 추계

[표 2]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 수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위원 수 증가(명, A)	30	30	30	30	30	-	-
회의 횟수(회, B)	3	3	3	3	3	-	-
회의수당 단가(백만원, C)	0.2	0.2	0.2	0.2	0.2	-	-
추가재정소요(백만원, A×B×C)	18	18	18	18	18	90	1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 결과,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제1항*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개최하므로 매년 개최 현황에 편차가 있을 수 있음 ('23년 5회 → '24년 2회 → '25년 1회 → '26년 1~6월 2회)

*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
2.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
3.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) 2026년 5월 31일 기준,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공무원 6명, 민간위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

3)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중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안

4)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예산처) -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0,000원내(서면심사 150,000원내)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,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(220목) 또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존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